

○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구매기업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구매기업용) (구 하나은행)	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구매기업용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내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 2015.08.25자 금 결원 발송공문(문 서번호: 전자어음 팀-147, 「전자채 권 결제제도 기본 약관」변경 추진 관련 협조요청) 반영	<p>제 9 조 (사고신고) ④지급정지가처분명령에 의해 전자채권이 지급정지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가처분담보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제 3 항과 같이 처리합니다.</p> <p>제 10 조 (전자채권의 양도) ② 판매기업이 민법 제 450 조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6 조 (약정기간)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하고, 유효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약정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 거래조건으로 1 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</p>	<p>제 9 조 (사고신고) ④지급정지가처분명령에 의해 전자채권이 지급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 가처분담보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제 3 항과 같이 처리합니다.</p> <p>제 10 조 (전자채권의 양도) ② 판매기업이 민법 제 450 조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 본인은 이를 승낙하기로 합니다</p> <p>제 16 조(약정기간)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.</p>	<p>-문구수정</p> <p>-문구수정</p> <p>-항 분리 (개별고지 필요)</p>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	<p>합니다. 다만, 보증전자채권의 경우 별도로 체결하는 "지급보증거래약정"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>② 은행은 계약만료일 전까지 계약만료일 의 도래 사실 및 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개별고지를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으로부터 개별고지를 받은 본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은행앞 별도 약정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 거래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.</p> <p>④ 보증전자채권의 경우 별도로 체결하는 “지급보증거래약정”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	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